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. 11. 14 선고 2024가단1128 판결 [보증채무금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31.

판 결 선 고 2024. 11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110,000,000원 및 그 중 100,000,000원에 대하여 2024. 10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13,7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10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의 가,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김용찬

별지